근로계약서

본 계약은 카페 김체키(이하 "사용자")와 근로자 김학생(이하 "근로자") 간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 1 조 (근로계약 기간)

본 계약의 기간은 2025 년 9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로 한다.

제 2 조 (근무 장소)

근로자는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소재 ○○카페에서 근무한다.

제 3 조 (업무 내용)

근로자의 업무는 음료 제조, 매장 청결 유지, 고객 응대 등 사용자 지시하는 카페 운영 관련 업무로 한다.

제 4 조 (근로시간 및 휴게시간)

- 1. 근로시간은 주 20 시간, 1 일 4 시간으로 한다.
- 2.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30분을 부여한다.

제 5 조 (임금)

- 1. 근로자의 임금은 시급 10,000 원으로 하며,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.
- 2. 법정수당(연장, 야간, 휴일근로수당 등)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.

제 6 조 (휴일)

근로자는 주 1회 이상 휴일을 보장받는다.

제 7 조 (사용자의 의무)

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하며,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제 8 조 (근로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)

- 1. 근로자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2. 사용자와 사전 협의 없이 무단 결근을 해서는 안 된다.
- 3. 고객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매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.

제 9 조 (손해배상 책임)

근로자는 근무 중 발생하는 고객 불만, 기기 고장 등 모든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.

제 10 조 (경업 금지)

근로자는 퇴직 후 2년간 동일 업종의 카페에 취업할 수 없다.

제 11 조 (계약 해지)

- 1.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 태만, 무단결근 등을 반복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2. 근로자는 7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본 계약의 효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.

2025 년 9월 11일

사용자(대표자): ___이체키_____ 근로자: ___김학생_____